

#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992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06. 5. 26  
제 출 자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2006년 지방세법 및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세 감면조례 중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, 사업소세 면제 규정 신설 (안 제5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 2006- 270 호
-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

나. 관련공문 : 세정과-2421(2006.03.08)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

## 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.

##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5조의2(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)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,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- ③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의2(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)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,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</p>